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3. 20 선고 2018가단2221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3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E 하천 952㎡ 중 각 1/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4. 8. 27. 접수 제50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신정민

별지